우수건축자산 등록번호 제 호

우수건축자산 등록증

명 칭:

종 류 : [건축물 / 공간환경 / 기반시설]

「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 • 도지사

직인

소유자	주 소	대상물건 소재지	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	실 기록자
(변 경 사 항)				
소유자	주 소	대상물건 소재?	지 변경 연월 열	일 기록자

[※] 주의사항

「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·제10조에 따라 증축·개축 및 철거 등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